

## 2016학년도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 집행 현황

□ 근거조항

-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1호
-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
-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

□ 예산편성 현황

(단위: 천원, %)

구 분	예산액(A')	결산액(B')	증감(B'-A')	비고
세입(A)	31,719,213	30,966,545	△752,668	
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(B)	6,314,905	6,175,040	△139,865	
비율(C=B/A)	19.9%	19.9%		

※ 세입(법 제11조 제3항 제1호) :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교육과정, 공개강좌, 산업체 위탁교육, 전공 심화과정,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,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(본예산 기준)